

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5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2월 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,
- 나.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유 사업 관련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,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, 제11조(협약체결 등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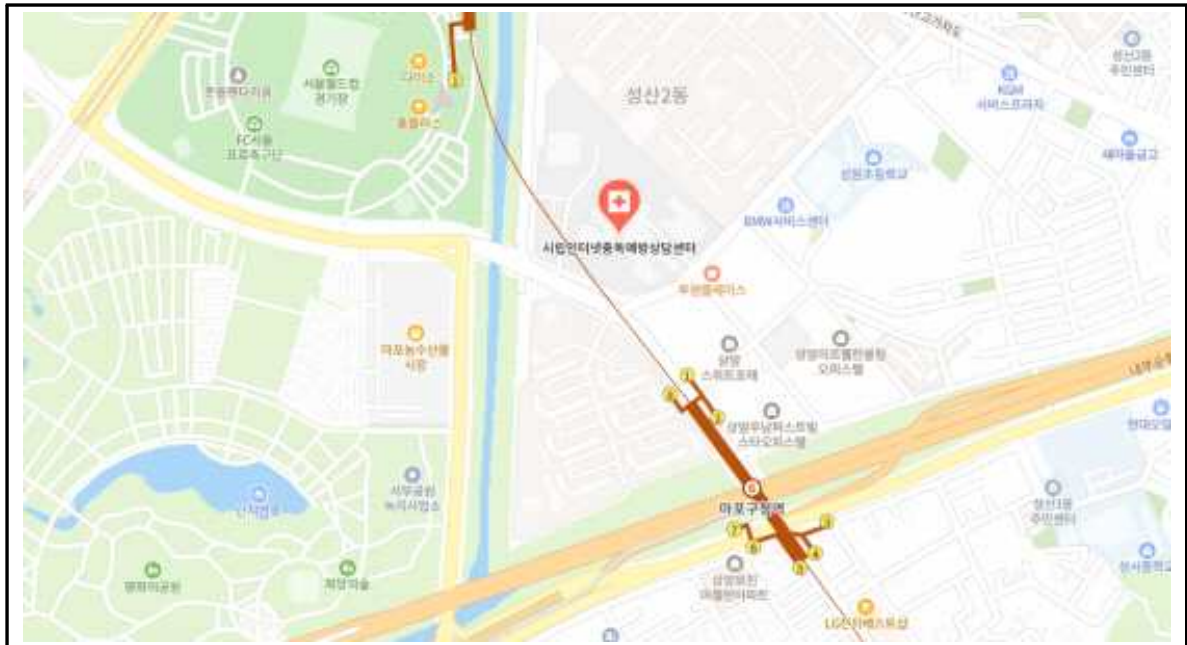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전문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으로,
- 급격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역기능이 고도화·다양화됨에 따라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정책 추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.
- 이에, 청소년 관련 풍부함 경험을 갖춘 상담 전문 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, 민간의 유기적인 조직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전달력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아울러, 소규모센터 재구조화를 통하여 대표센터-사무소(5개소) 체계를 확립하여, 연구·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
- 인터넷중독 상담·치료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·상담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
- 기타 인터넷중독 예방·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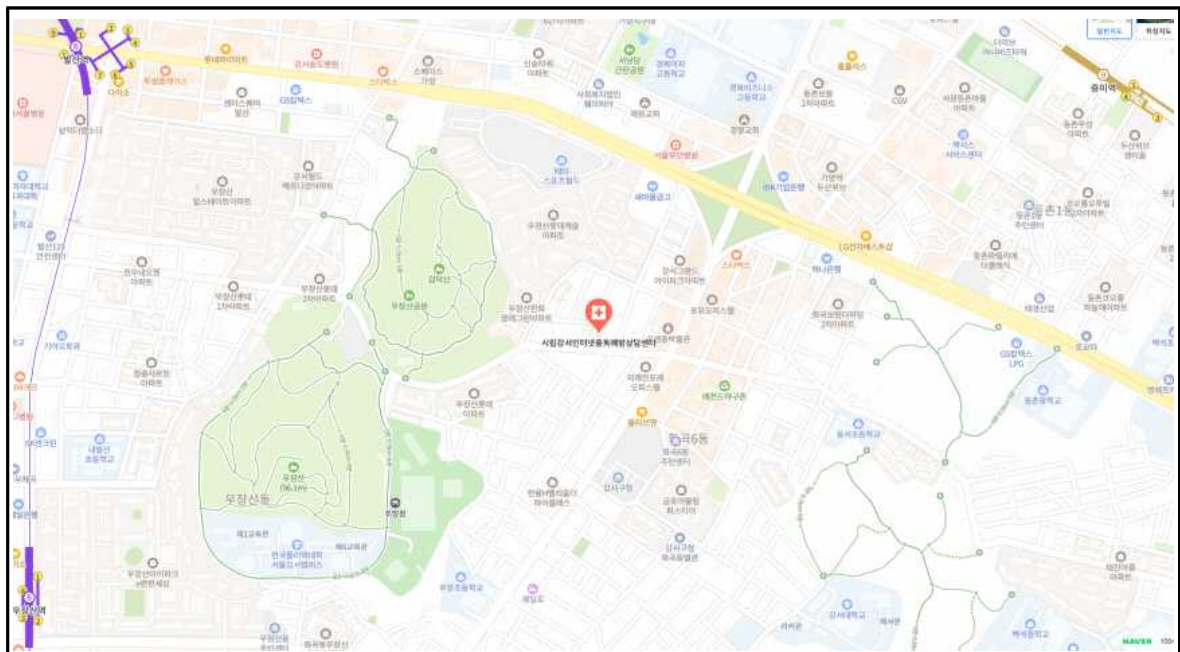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○ 대표센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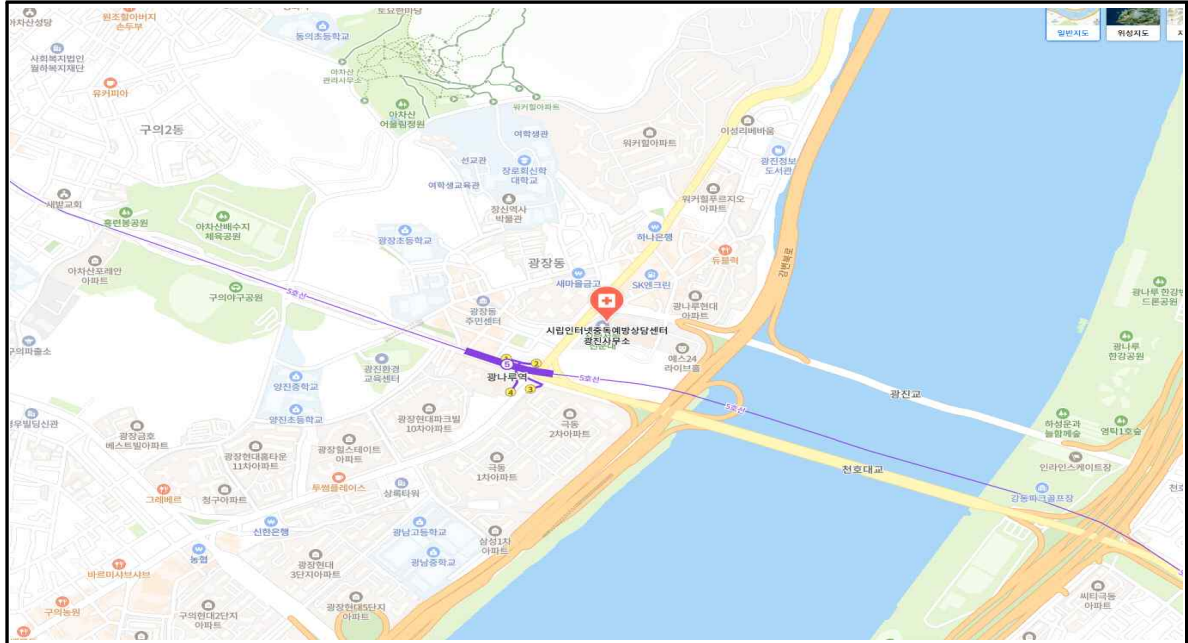
소재지(면적)	마포구 월드컵로 212, 1층(200.52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○ 강서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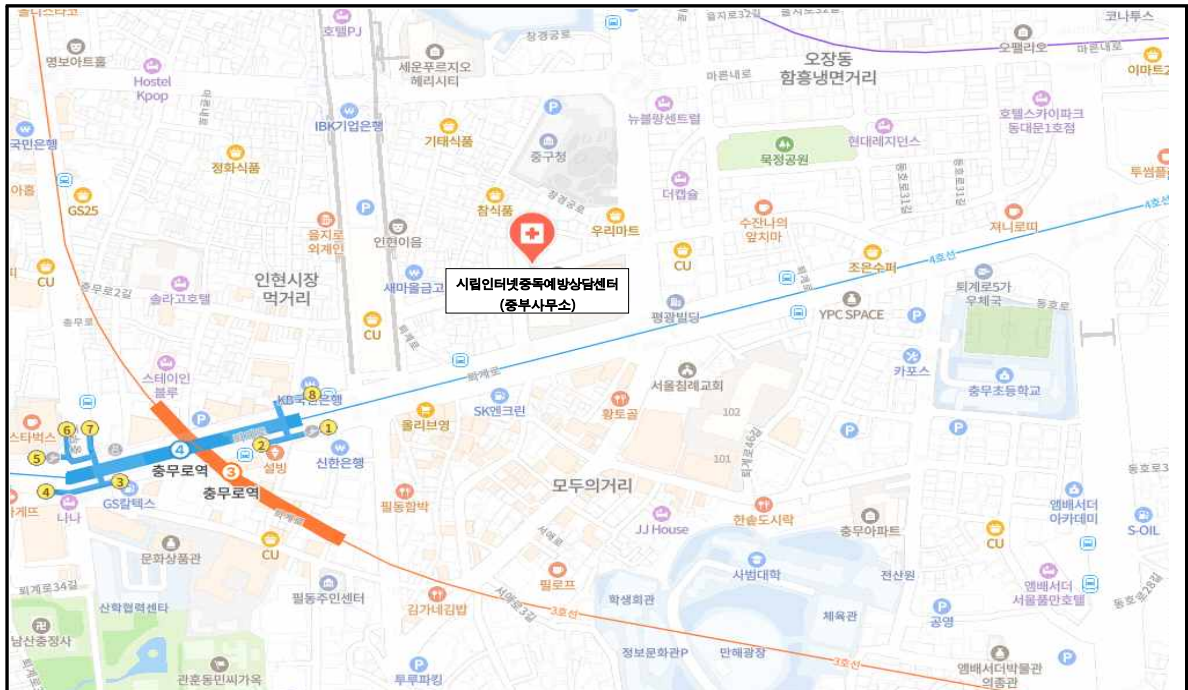
소재지(면적)	강서구 우장산로 117(274.17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○ 광진사무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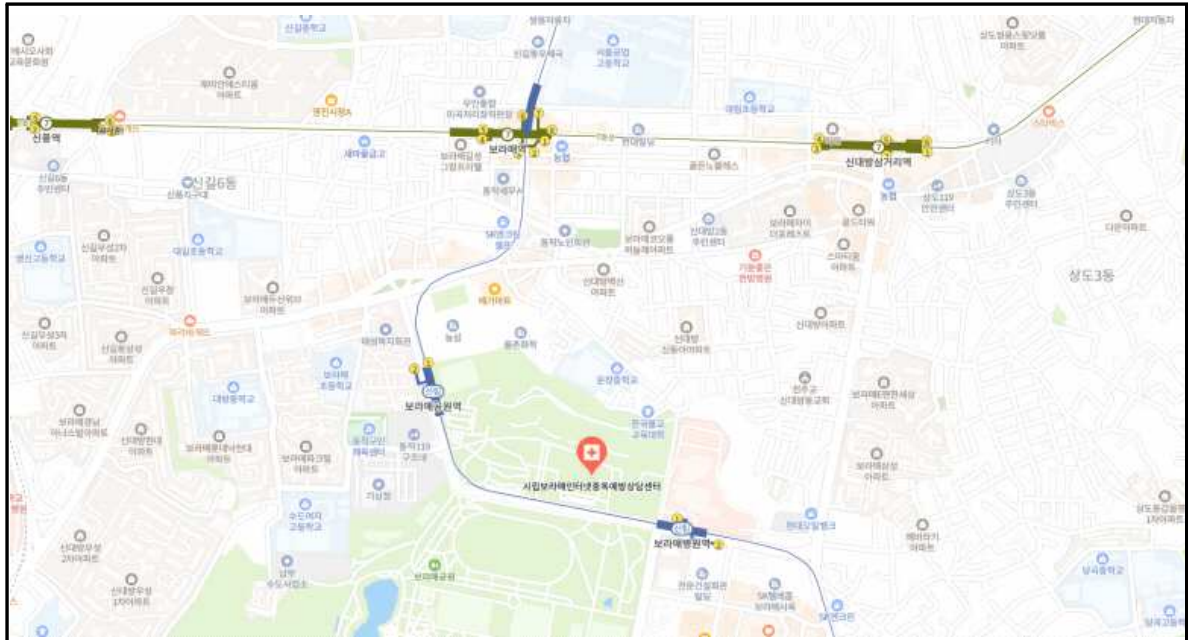
소재지(면적)	광진구 구천면로 2(219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○ 중부사무소



소재지(면적)	중구 창경궁로1길 201(288.43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○ 보라매사무소(`26.7.1. 분소화 예정)



소재지(면적)	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61(203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○ 창동사무소(`26.7.1. 분소화 예정)



소재지(면적)	도봉구 노해로69길 132(191.21㎡)
시설소유	시유재산
주요시설	개인·집단 상담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6.7.1.~2029.6.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4,771백만원('26년)

○ 산출근거

- 인건비 3,582백만원, 운영비 339백만원, 사업비 85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| |
|---|
|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---|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| |
|--|
|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|
|--|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| |
|---|
|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|
|---|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| |
|--|
|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|
|--|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한정민 (☎ 2133-4130)